

[붙임] 2026.2월 미동의 정보제공건 공시(안)

□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현황 I (2019.1.1.~2026.2.28.)

(단위 : 건)

제공기간	제공사유	순보험료 산출목적	감독·검사 목적	보험전문인 시험 관리	법원 등 기타	합계
'19년	1~ 6월	52,515	44,085	-	12,353	108,953 ¹⁾
	7~12월	51,396	1,855,217	-	19,322	1,925,935
'20년	1~ 6월	1,290	2,120,031	7,022	16,766	2,145,109
	7~12월	1	51	6,024	15,248	21,324 ²⁾
'21년	1~ 6월	9	8,776	7,147	6,756	22,688
	7~12월	10	-	5,862	8,107	13,979 ³⁾
'22년	1~ 6월	4	-	6,438	48,405	54,847
	7~12월	2	-	6,115	8,305	14,422
'23년	1~ 6월	-	425,385	6,959	40,285	472,629 ⁴⁾
	7~12월	2	-	-	7,805	7,807 ⁵⁾
'24년	1~ 6월	1	5,304	-	8,836	14,141 ⁶⁾
	7~12월	2	111	-	7,529	7,642
'25년	1~ 6월	1	-	-	19,726	19,727
	7~12월	5	-	-	7,388	7,393
'26년	1월	-	-	-	31	31
	2월	-	-	-	5,599	5,599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만기갱신율, 교통법규 위반정보를 12개 손해보험회사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 제12항 제1호)
2.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감독·검사, 감사원의 감사** 등의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정보를 금융감독원, 감사원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제133조, 제179조, 제194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2조, 감사원법 제50조)
3. **금융감독원의 보험전문인 시험 관리**의 목적으로 감염병 확진자·자가격리자 정보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3호 등)
4.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확인, 연금 수급권 적정성 확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정보를 법원, 경찰청, 국민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에, **회원가입 여부 확인 및**

탈퇴 조치 진행을 위한 웹사이트 회원·민원처리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침수화재로 인한 전손차량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 (제공 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89조, 국민연금법 제12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7조, 제38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 등)

5. **108,953건¹⁾ 외에 정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협의사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 목적으로 보험정보 **38,520,000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제공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 연구 관련 협조 요청(금융위, 2018.10.25.))
6. **21,324건²⁾ 외에 정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협의사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지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목적으로 보험정보 **34,790,193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제공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관련 협조 요청(금융위, 2020.7.31.))
7. **13,979건³⁾ 외에 정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협의사항에 따라 건강보험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202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영향 분석연구”** 목적으로 보험정보 **33,903,574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제공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202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영향 분석 연구 관련 협조 요청(금융위, 2021.7.21.))

감사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와 관련하여 4년간(‘17~’20년)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명단 제출 요청에 따라 보험정보 **33,493,444건**을 감사원에 제공 (제공근거: 감사원법 제50조,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2조의2, [이송] 감사자료 협조 요청(금융위, 2021.8.30.), 감사자료 협조 요청(감사원, 2021.8.25.))
8. **472,629건⁴⁾ 외에 감사원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 관련하여 최근 2년간(‘20~’21년)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명단 제출 요청에 따라 보험정보 **72,337,864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제공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및 제9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자료제공 요청(국민건강보험공단, 2023.2.22.), 감사자료 제출 협조 요청(감사원, 2022.11.29.))
9. **7,807건⁵⁾ 외에 감사원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 관련하여 최근 7년간(‘17~’23.6월)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정보, 지급 정보 및 11대 비급여지급 정보 제출 요청에 따라 보험정보 **728,415,274건**을 감사원에 제공 (제공근거: 보험업법 제176조,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제33조, 감사원법 제50조, 감사자료 제출 요구(감사원, 2023.10.27.))
10. **14,141건⁶⁾ 외에 위 9.에 기 제공된 자료에 대한 일부 정정 및 추가 정보**

제출 요청에 따라 보험정보 23,596,325건을 감사원에 제공 (제공근거: 보험업법 제176조,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제33조, 감사원법 제50조, 감사자료 제출 요구(감사원, 2023.10.27.)

감사원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와 관련하여 대인담보 종결 피해자 합의일자 자료 요청에 따라 보험정보 8,526,521건을 감사원에 제공(제공근거: 감사원법 제27조 등, 자료제출 협조 요구(감사원, 2024.4.1.)

감사원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와 관련하여 대인담보 병원치료비 및 직불치료비 미지급 대상자 자료 요청에 따라 보험정보 110,863건을 감사원에 제공(제공근거: 감사원법 제27조 등, 감사자료 제출 요구(감사원, 2024.4.23.)

감사원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보험정보 672,724,150건을 감사원에 제공 (제공근거: 감사원법 제27조, 제50조 등, 감사자료 제출 요구(감사원, 2024.5.30.)

□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현황Ⅱ(2014.10.16.~2018.12.31.)

(단위 : 건)

제공사유 제공기간		순보험료 산출목적	보험계약 체결·유지 및 보험금 지급 목적	감독·검사 목적	법원 등 기타	합계
'14년	10~12월	399만	642만	115만	901	1,156만
'15년	1~ 6월	1,030만	489만	11만	1,723	1,530만
	7~12월	957만	450만	5,720	1,928	1,409만
'16년	1~ 6월	32만	378만	4,134	1,828	410만
	7~12월	30만	13만	6,336	2,149	44만
'17년	1~ 6월	7만	8만	170만	2,082	185만
	7~12월	5만	8,229	3,744	1만	7만
'18년	1~ 6월	8만	2만	-	2만	11만*
	7~12월	4만	1만	4만	1만	10만**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만기갱신율, 교통법규 위반정보를 12개 손해보험회사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 제12항 제1호)
2.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유지 및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정보를 41개 보험회사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3.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감독·검사, 감사원의 감사** 등의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정보를 금융감독원, 감사원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제133조, 제179조, 제194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2조, 감사원법 제50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확인, 연금 수급권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정보를 법원, 경찰청, 국민연금공단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89조, 국민연금법 제123조 등)
5. **11만건* 외에 ICPS 업무이전 목적으로 보험정보 294,148,907건 및 14,721,643건을** (사)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제공근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업무이전 계약서(2018.1.) 및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이관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7.12.20.)), **참조순보험료 산출을 위한 사망통계의 정확성 확인** 목적으로 보험정보 46,578,936건을 행정안전부에 제공(제공근거: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 6 10만건** 외에 ICPS 업무이전 목적으로 보험정보 619,374,973건 및 798,829,177건을 (사)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제공근거: 보험사고정보 시스템(ICPS) 업무이전 계약서(2018.1.) 및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이관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7.12.20.)), 정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협의사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 목적으로 보험정보 30,719,606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제공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 연구 관련 협조 요청(금융위, 2018.10.25.))

[붙임2] 미동의 제공 건에 대한 연락처 제출 요청 현황(2026.2월~2026.6월)

구 분		관 리 팀	2026.2		2026.3		2026.4		2026.5		2026.6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시 스 템	보험정보망	법무팀										
정 기	자동차보험 갱신을, 법규위반 정보	자 동 차 보 험 팀										
	자손보험금 환급정보/ 보험사기 환급정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정보	자 동 차 통 계 팀	973						990			

구 분		관 리 팀	2026.2		2026.3		2026.4		2026.5		2026.6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대상자						1,588					
	자동차보험 지급자료 (국민연금)				1,205		-				1,789	
	차량기준가액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						-					
	차량기준가액 정보 제공 (인사혁신처)						38,811		10,038		3,807	
수 시	제출명령, 사실조회 (법원)	자 동 차 통 계 팀	1		1		1		2		2	

구 분		관 리 팀	2026.2		2026.3		2026.4		2026.5		2026.6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생명장기통계팀			1						1	
		자동차기술연구소							1			
	보험사기 환급정보 (금감원)	자동차 통계팀					-					
	장애등급 확인(경찰청)						-					
	시험 합격자 명단(금감원)	약관연구팀										

구 분	관 리 팀	2026.2		2026.3		2026.4		2026.5		2026.6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미동의 제공건	연락처 요청 현황
가입여부 및 회원탈퇴 (한국인터넷 진흥원)	자 동 차 보 험 2 팀	8		10		0	*'26.04~ 개인정보 미동의→동의				

- 우리원이 고의·과실 없이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공시하게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사의 연락처 제출 의무 규정화 또는 연락처 요청 사실 등에 대한 근거 확보 필요
⇒ 개인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각 업무팀의 책임하에 수행(3회 이상 요청 원칙. 단, 미동의 건이 없을 경우 보험사에게 따로 요청하지 않음)
- 자동차보험 갱신을 및 법규 위반 정보의 경우 동의 여부 확인 및 미동의 시 연락처 제출 요청 공문* 송부
- 보험사 이외 기관에 대한 연락처 요청 근거 : 없음
⇒ 고의·과실 없이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연락처 요청 없이 공시 처리(국민연금의 경우 분기별 1회 연락처 요청)